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198호 2016. 8. 8(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1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11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2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11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명 고시 ----- 6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5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호선 및 소3-5호선)  
공사완료 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53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불로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열람 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63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6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6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 3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10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가. 허가 번호 : 제2016 - 07호

나. 허가연월일 : 2016. 08. 02.

2. 점용·사용의 목적 : 하수관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서구 대곡동 727-39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1.0m<sup>2</sup>

나. 기 간 : 2016. 08. 02. ~ 2018. 12. 31. (882일)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양\*\*, 김\*\*

나. 주 소 : 인천 서구 서곶로 \*\*\*번길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12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6호선)사업(미개설구간)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도로시설 : B=15m, L=14m, A=207㎡(금회 사업구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비고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2	166	15	285	271	14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학교법인 봉선학원 이사장 이재욱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정로33(십정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 초 : 2015. 06. 29. ~ 2016. 08. 31.
  - 변 경 : 2015. 06. 29. ~ 2017. 0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당하동	942-6	전	67	1	한국 농어촌공사	학교법인 봉선학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2	당하동	943-19	구	112	102	한국 농어촌공사	학교법인 봉선학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3	당하동	943-6	잡	52	52	한국 농어촌공사	학교법인 봉선학원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4	당하동	943-10	답	436	24	김한준	학교법인 봉선학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5-31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5	당하동	산214-1	임	15,195	28	이대순	학교법인 봉선학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40-15 제일아파트2동 909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06	-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2	166	15	집산 도로	285 (14)	광로 3-27	인천세무고등학교, 당하동 943-6	일반 도로		'99.6.23	

※( )는 금회 사업구간(세무고등학교 진입도로) 연장임.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1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89-12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8. 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8-0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8-59, 218-6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189-12 (백석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62-8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02번길 12 (검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49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7번길 20 (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32-12	인천광역시 서구 첨단서로 130 (경서동)	2010-11-11	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착안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99-2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184 (경서동)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20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16번길 19 (경서동)	2013-07-30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4-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 45 (경서동)	2012-03-30	우주, 진실이 가득하라는 의미를 부여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3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129-57 (경서동)	2009-09-22	도로인근에 녹청자 도요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9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89-5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22번길 15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A7-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길 3 (가정동)	2014-10-15	염곡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9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48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2번안길 41 (원창동, 건원프라자)	2013-12-02	북향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129-1, 128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68번길 21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3,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70-12, 470-6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223번길 31-2 (금곡동)	2009-09-22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47-2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49 (오류동)	2012-10-25	뱃길로에서 분기되는 첫번째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15호

##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2. 위      치 : 서구 연희동 709-1번지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기 정					변 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5	4,941.4	1	1,129.7		35	4,941.4	1	1,129.7	
		2	336.0				2	336.0	
		3	219.0				3	219.0	
		4	270.4	도로2.0㎡			4	270.4	도로2.0㎡
		5	391.0				5	645.1	5, 6, 12 획지합병
		6	127.1						
		7-1	277.1				7-1	277.1	
		7-2	295.0				7-2	295.0	
		8-1	283.3				8-1	283.3	
		8-2	239.1				8-2	239.1	
		9	338.5				9	338.5	
		10-1	316.8				10-1	316.8	
		10-2	360.1				10-2	360.1	
		10-3	231.3				10-3	231.3	
		<b>12</b>	<b>127.0</b>						

○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5	5, 6, 12 → 5	획지합병	소규모 획지의 합병으로 건축규모 확장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50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 및 소3-5호선)

### 공사완료 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72(2016.05.16.)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류2호선 및 소로3류5호선, 사업명: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4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류2호선)
  - 명 칭 : 공촌취락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 도 로 : (소로3류2호선) L = 231m, B = 6m, A = 2,069m<sup>2</sup>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사업기간 : 2014. 05. 26 ~ 2016. 06. 30.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류5호선)
  - 명 칭 :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 규모
  - 도 로 : (소로3류5호선)  $L = 66m$ ,  $B = 6m$ ,  $A = 500m^2$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5. 사업기간 : 2015. 09. 14 ~ 2016. 06. 3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53호

##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 8.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비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획 지		비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C-1	31	5	279.5		C-1	31	5	521.2	획지합병
		6	241.7				-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5773)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63호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활용) 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건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6. 08. 08. ~ 08. 22(15일간)
  3. 대상 자전거 : 붙임참조
  4. 내 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로 활용)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보 관 장 소 : 검암역 창고
  6. 연 락 처 : 인천 서구청 건설과 (☎ 032-560-4623)
- 붙임 : 무단방치자전거 처분공고 대장 1부.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대장

연번	발견일시	발견장소	제조회사	색상	파손상태	이동일자	보관장소	비고
1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삼천리	흰색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알톤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삼천리	빨강	안장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삼천리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6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THE BLAKE	연두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7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소나타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8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SMART	회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9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회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10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SMART	흰색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대장

연번	발견일시	발견장소	제조회사	색상	파손상태	이동일자	보관장소	비고
11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알톤	검정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12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삼천리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13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노랑	안장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14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15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코렉스	회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16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회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17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18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19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0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DITTO BIKE	흰색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대장

연번	발견일시	발견장소	제조회사	색상	파손상태	이동일자	보관장소	비고
21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알톤	회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2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KENIA	회색	안장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3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분홍	안장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4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BICAN	회색	안장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5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삼천리	회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6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코렉스	회색	안장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7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검정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8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SPOZIO	검정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29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흰색	안장, 릿바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0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코렉스	흰색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대장

연번	발견일시	발견장소	제조회사	색상	파손상태	이동일자	보관장소	비고
31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삼천리	흰색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2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3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파랑	안장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4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알톤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5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6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7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NEXT	파랑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8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은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39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알톤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0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은색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대장

연번	발견일시	발견장소	제조회사	색상	파손상태	이동일자	보관장소	비고
41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은색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2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3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흰색	안장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4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NEXT	은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5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은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6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파랑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7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8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49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0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레스포	주황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공고 대장

연번	발견일시	발견장소	제조회사	색상	파손상태	이동일자	보관장소	비고
51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ZYPEN	빨강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2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코렉스	빨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3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무명	검정	안장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4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SMART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5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스피도	흰색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6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알톤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7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NEXT	파랑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8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검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59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TOSCANO	빨강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60	2016.05.17.	검암역 (자전거보관대)	미상	흰색	안장, 타이어 등	2016.07.29.	검암역 창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67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8. 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16. 8. 8. ~ 2016. 8. 23.(15일간)

□ 공고내용

1. 행정처분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등록번호	22가4402 외 5대 (“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032-560-4877, FAX 032-560-2794)		

## ※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등록된 자동차, 즉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불법 운행된 사유	등록일
1	22가4402	SM520	기타	2016.08.03
2	36러6384	BMW 735LI	기타	2016.08.03
3	32모3212	아반떼(AVANTE)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08.02
4	경기39노1741	마티즈	기타	2016.08.01
5	21소9460	로체	도난·분실자동차	2016.07.26
6	11노1020	링컨 MKZ	기타	2016.07.2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6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고, 향후 대규모 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
- 기금의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12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52, 팩스 560-270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공유재산매각대금(손실보상금 포함)
3.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사용한다.

제6조(회계관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담당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총괄·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7조(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설치 및 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 ⑤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2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공유재산매각대금(손실보상금 포함)
3.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모든 비용에 사용한다.

제6조(회계관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2. 기금운용관 : 소관부서장

### 3. 기금출납원 : 소관부서 업무담당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총괄·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7조(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설치 및 운용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 및 공공용 시설·건축물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기금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3. 기금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 ⑤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2조(위원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관계법령발췌**

## ○ 지방자치법 142조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  
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라. 관계법령발췌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  
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0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 입안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1-45호선 외 7개노선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1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및 신설

나. 입안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을 통한 합리적인 가로망 체계를 형성하고 중화학  
공업 중심의 노후된 공업지역 정비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도로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2	30 ~ 33	주간선도로	8,081	도화동 대로2-4	부천시 구역계	일반도로	11,22,32호광장	경고제160(1976.7.8.)	-
변경	대로	2	32	30 ~ 33	주간선도로	8,081	도화동 대로2-4	부천시 구역계	일반도로	11,22,32호광장	경고제160(1976.7.8.)	일부폭원 조정
기정	소로	1	45	10	국지도로	85	중로 1-26	소로1-47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3	208	12	국지도로	85	중로 1-26	소로1-47	일반도로	-	-	폭원확장
기정	소로	1	46	10	국지도로	208	중로 1-26	대로 2-32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46	10	국지도로	208	중로 1-26	대로 2-32	일반도로	-	-	도로모퉁이 조정
기정	소로	1	47	10	국지도로	371	소로 3-354	대로2-32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1	47	10	국지도로	371	소로 3-354	대로2-32	일반도로	-	-	도로모퉁이 조정
신설	중로	3	209	12	국지도로	179	소로1-47	소로1-54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52	10	국지도로	68	중로3-208	교통광장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53	10	국지도로	140	중로3-208	소로1-46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54	10	국지도로	123	대로2-32	교통광장	일반도로	-	-	-

※ 중로 노선번호는 결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2-32	대로2-32	· 일부 폭원 확장 · 폭원(B) = 30m → 33m (161m)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소로와의 차량상충방지를 위한 완화차로 확보
소로1-45	중로3-298	· 폭원 확장 · 폭원(B) = 10m → 12m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폭원확장
소로1-46	소로1-46	· 도로모퉁이 조정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모퉁이 조정
소로1-47	소로1-47	· 도로모퉁이 조정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모퉁이 조정
-	중로3-299	· 도로 신설 · 폭원(B) = 12m, 연장(L) = 179m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1-52	· 도로 신설 · 폭원(B) = 10m, 연장(L) = 68m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1-53	· 도로 신설 · 폭원(B) = 10m, 연장(L) = 140m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소로1-54	· 도로 신설 · 폭원(B) = 10m, 연장(L) = 123m	· 코스모화학 공장 폐쇄 이후 발생한 종전대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신설

##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3)